

【 주간포커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제반 영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첫째,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전면 허용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폭은 보다 확대될 것이다. 둘째,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퇴직연금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등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마련, 계약이전 및 제도 변경과 관련된 규정 보완 등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가입자보호도 개선될 것이다. 셋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퇴직 시 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 전환의무화 조치 등은 퇴직연금시장의 확대에 이어져 결국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근퇴법 개정안의 제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금융회사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다.

□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 및 수급권보호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근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는 퇴직연금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온 퇴직연금제도상의 제반 문제점이 고려되어 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임.

□ 이에 근퇴법 개정안이 근로자, 사용자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음.

□ 첫째, 근로자와 사용자인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선택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근퇴법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전면 허용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폭이 넓어질 것임.

1)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설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또한 복수사용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허용²⁾함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적용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영세한 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니즈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
-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폭이 확대될 경우 제도 도입 및 설계능력 제고 방안 등이 금융회사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임.

□ 둘째,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및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지급보증제도와 같은 수급권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퇴직연금 우선변제 규정을 명확히 하였음.
 -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우선변제규정을 적용하고 적립비율과 관계없이 총적립금 이내에서 퇴직자에게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사업년도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최소적립금이 하회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해소하고,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래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며, 150% 초과 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
-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마련, 계약이전 및 제도변경과 관련된 규정 보완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가입자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자발적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 신청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사업 중단의 경우 가입자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 금융기관의 사업개시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취소(3년) 또는 등록말소(2년) 및 취소(2년)시에 재진입 제한

□ 셋째,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2) 일본 등처럼 복수사용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이번 근퇴법 개정안의 특징임.

- 신설사업장의 제도가입 의무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등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즉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자동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자영업자 등의 개인형 퇴직연금가입 허용, 퇴직 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도록 한 규정 등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금융회사는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 자영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관련 규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다 견고히 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임.
- 이처럼 근퇴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선택폭 확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재무건전성 강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가시화 등에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
- 근퇴법 개정의 영향에 따른 퇴직연금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새로운 대응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임. KiRi